

이제 SOFA“시설·구역의 보안 조치”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7월5일 저녁 8시쯤 미군 시설·구역을 영외 순찰중이던 미군 헌병들이 추정차문제로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던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의 송탄 주둔 미군헌병이 미군부대 인근 추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Y씨에게 차량의 이동주차를 요구하자, Y씨는 이동주차를 하고 가게로 돌아왔다. 그런데 미군 헌병들이 돌아가지 않고, Y씨 가게로 들어와 Y씨에게 수갑을 채웠을 뿐 아니라, 이를 항의하고 제지하던 S씨와 Y씨의 동생 M씨에게까지 수갑을 채우고 미군부대에 3명 모두를 데려가려고 한 것이다. 미군은 평택 송탄 파출소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이들 3명의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가족들과 국민들은 너무나 공분하였다.

물론 미군 헌병이 영외 순찰중에 사소한 일로 한국 민간인들을 수갑을 채워 체포·감금한 것은 자주 있었다. 우리는 이제 흥분만 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 그 요인과 근본적 대책을 고심할 때이다.

미군은 영외순찰 활동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규정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중이었다고 강변했다. 이것은 우리 SOFA의 시설·구역의 공여, 반환, 관리 규정 중에서 특히 보안조치를 포함한 ‘관리’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문제이다. 특히 보안조치를 포함한 ‘관리’ 규정이 시설·구역 안팎으로 미군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부여한데 요인이 있다. 미군이 수갑을 채운 논거가 바로 SOFA 제3조의 시설·구역(Facilities and Areas)의 보안조치(Security Measures)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한미 SOFA 제3조 제1항의 보안조치 규정은 타국의 SOFA 규정에 비교해 미군의

이 장 희

-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
- ILA런던본부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상임위원
-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역의 보안조치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 SOFA 제3조 제1항은 “미국은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미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군의 요청과 한미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로 되어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행 SOFA 제3조 제1항의 시설·구역의 보안조치는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시설과 구역 내부의 보안조치는 미군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시설·구역외의 보안조치는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위해 우리정부가 미국 또는 한미합동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

셋째, 비상시에는 시설구역 주변에서 동 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미군이 직접 조치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우리 SOFA 시설·구역 조항은 미군기지 주변의 보안조치에 대해 미군은 선택적으로 권리를 취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불평등한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 독일, 필리핀 SOFA 시설구역의 보안조치 규정은 시설 구역 내에서조차도 미군의 군사활동이나 핵무기

등 보유에 대해서 접수국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일본과 필리핀의 SOFA는 시설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영공에 대해서는 광범한 미군의 보안 조치권을 우리처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현행 한국의 SOFA는 시설 구역의 관리를 안팎에서 미군에게 보안조치권을 과도하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군 헌병들이 부대 인근에서 단순한 주정차 문제로 한국민간인을 체포·감금하는 것은 SOFA의 시설·구역외의 보안조치권에 근거한 하위규정을 믿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군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한미당국은 SOFA 합동위원회 [시설 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합의사항을 결의하면 해결된다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고, 밀실에서 비공개리에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한미합동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지도 않았다. 1966년 제정된 SOFA는 1991년 제1차 개정, 2001년 제2차 개정에서 시설·구역의 보안조치 분야에서는 근본적 개정이 없었다.

이번 사건 마무리가 미8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를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향후에도 미군 기지 주변의 민간인을 불법 체포하거나 우리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글로벌 기동군으로서 주한미군을 해외파병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불평등한 SOFA의 시설·구역의 보안조치 규정도 타국 SOFA 수준으로 개정하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